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목 차>

- 1.LNG 저장탱크의 종합안전등급 및 진단 항목·주기
- 2.가스온수기 시공자의 보험 가입
- 3.임시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및 안전기준 등
- 4.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 성 자	이름	이규정
	담당부서 (과)	자원안전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代)권덕중		연락처	044-203-5183
	과장	김대영		이메일	rock6848@mail. go.kr

2026. 02. 04.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자원산업정책관(代) 권 덕 중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LNG 저장탱크의 종합안전등급 및 진단 항목·주기											
	2.규제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5 제1호라목1)가) 및 마목											
	3.위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2.11~2026.03.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추진배경) 저장탱크의 구조·열화특성 등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나, 저장탱크별 설치 환경·유지보수에 따라 위험도가 상이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차등화 관리가 필요하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저장탱크가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평가 체계 미비</p> <p>○ (정부개입 필요성) 고위험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진단 결과에 따른 집중점검 등 맞춤형 안전관리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한 대국민 안전성 확보 필요</p>											
	7.규제내용	<p>○ LNG 저장탱크 종합안전등급 산정에 따른 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안전기준 마련</p>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한국가스안전공사</p>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td><td>가스공사 (1개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개사)</td></tr><tr><td>이해관계자</td><td>한국가스안전공사</td><td>1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사 (1개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개사)	이해관계자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사 (1개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개사)											
이해관계자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사											
9.규제목표	<p>○ 정밀안전진단 주기 차등화에 따른 사업자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으로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p> <p>○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에 배관 등의 이설·교체 공사 시 임시공급시설 설치를 통한 현장 작업의 안전성 확보 및 가스사고예방</p>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LNG 저장											

	분석 (정성분석)	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 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으로 화재·폭발 사고 발생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 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 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3.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u>		<u>다. 나목의 해 이후는 별표5 제1호마</u>	
		<u>목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종합안전</u>	
		<u>등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u>	
[별표 5]		[별표 5]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	
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의 기준		평가의 기준	
1. 제조소 및 공급소		1.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진단·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라. -----	
1) 진단 및 평가항목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2) -----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진단항		-----	
목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자료 수집 및	저장탱크 설계도면, 저장탱크 시공 및 수리 등 변경 이력, 저장탱크 운전정보·운전이력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신 설>	(가) 자료 수집 및	저장탱크 설계도면, 저장탱크 시공 및 수리 등 변경 이력, 저장탱크 운전정보·운전이력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u>내진성능평가(지진 으로부터 가스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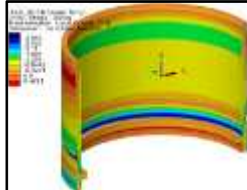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분석 분야		분석 분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								
(나) 현장 조사 분야	지반 침하·변형 등 지반 조사, 저장탱크 외면 균열 및 콘크리트 박리 상태 등 저장탱크 외관 및 구조물 조사, 콘크리트 내부 철근 부식 유무(탱크 외부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정밀 누출 장비에 의한 가스누출조사(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나) 현장 조사 분야	지반 침하·변형 등 지반 조사, 저장탱크 외면 균열 및 콘크리트 박리 상태 등 저장탱크 외관 및 구조물 조사, 콘크리트 내부 철근 부식 유무(탱크 외부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정밀 누출 장비에 의한 가스누출조사(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구조물 안전성 평가등급(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등급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산정, 구조물 진단 등급(부재별 상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외관 상태를 하나의 등급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산정,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확인								
(다) 안전성 분석 및 보수·보강 조치 분야	저장탱크 종합 평가(자료 및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저장탱크 보수·보강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성 분석 및 보수·보강 조치 분야	종합안전등급(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산정 -----								
>		>									
<신설>		현행과 같음>									
		마. 종합안전등급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주기									
		<table><tr><td>종합안전등급</td><td>진단주기</td></tr><tr><td>A등급</td><td>6년</td></tr><tr><td>B ~ C등급</td><td>5년</td></tr><tr><td>D ~ E등급</td><td>4년</td></tr></table>		종합안전등급	진단주기	A등급	6년	B ~ C등급	5년	D ~ E등급	4년
종합안전등급	진단주기										
A등급	6년										
B ~ C등급	5년										
D ~ E등급	4년										
		비고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마지막 진단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저장탱크는 설치위치·환경·유지보수 이력 등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안전등급 결과를 기반으로 저장탱크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LNG 저장탱크의 구조물 안전성평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안전등급에 따라 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 필요

< LNG 저장탱크 종합안전등급 산정절차 >

구분	종합안전등급 산정절차 세부내용			
등급 절차	○ LNG 종합 안전등급은 콘크리트 등 구조물 진단 및 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를 중 낮은 등급을 종합안전등급으로 산정함 (A등급 : 6년, B등급 ~ C등급 : 5년, D등급 ~ E등급 : 4년)			
평가 구분	○ 구조물 진단		○ 구조물 안전성 평가	
사진 설명		○ 구조물의 표면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 LNG 저장탱크 부재별 안전율을 평가함

<내진성능평가 정의와 평가 절차·등급>

구분	내진성능평가
정의	○ 지진으로부터 가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 검토함
평가 절차	○ 내진성능의 평가 → 보강 여부 판정 → (필요시) 내진보강 공법 결정
평가 등급	○ 적합/부적합 (안전등급제와 분리하여 평가 후 불합격 시 보수·보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내용)** LNG 저장탱크 종합안전등급에 따른 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
- **(선택 근거)** 저장탱크는 운영이력에 따라 위험도 편차가 있으므로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진이 발생 시 저장탱크가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간담회 실시('25.05.15) -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	상기 개정안에 동의하나, 이 중 내진성능평가 제도 도입에 앞서 준비기간이 필요함	부칙반영

3. 규제목표

- 저장탱크별 종합안전등급에 따라 법정 진단 주기의 재조정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저장탱크의 수명 연장 및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
- 저장탱크가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 내진성능평가 도입을 통해 고위험 설비인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LNG 저장탱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진단주기 차등화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며, 지진으로부터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가스도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향후 정책 환경변화 등과 관계없이
규제 존속 필요(재검토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가스도매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 규정으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 규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 규정으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진단주기 차등화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저장탱크에 대한 내진성능검토를 수행중이므로 종합안전등급에 따른 진단주기 차등화와 내진성능평가 도입에 대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저장탱크별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 및 내진성능평가 도입을 통해 기존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부 공고('25.3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5.6 ~ 12월)
- 입법예고('26.2월 ~ 3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도시기스사업자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한 합리적인 규제 수단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스온수기 시공자의 보험 가입												
	2.규제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3.위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2.11~2026.03.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현행 규정상 가스온수기가 가스사고배상책임 보상에서 제외되어 사고 발생 시 가스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지 못함 ○ (정부개입 필요성)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고배상보험 대상에 가스온수기도 포함 필요												
	7.규제내용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 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일반도시가스사업자</td><td>34개사</td></tr><tr><td>피규제자</td><td>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td><td>1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4개사	피규제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4개사											
피규제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개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가스온수기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물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화재·폭발 사고 발생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보험】 ① <생략>	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보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② ----- ----- ----- ----- ----- -----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가스시공자가 가스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온수기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가스온수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스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정부개입 필요성)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대국민 안전확보 필요
 -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상에 가스온수기 추가 필요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상해 또는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형태임

(참고사항) 액법의 경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 기존 규제 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가스사용시설 안전기준 마련
	내용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 가스온수기는 가스배상책임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함
규제대안2	○ 가스온수기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해소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 등	○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 가스사용시설 배관의 안전기준 개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25.06.30)	가스공급시설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닌 가스사용시설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준 건의 마련	상세기준인 KGS Code 반영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가스온수기는 가스보일러와 유사한 형태로서 밀폐공간 사용 비중이 높아 일산화탄소 중독 등 중대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보다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제목표

- 가스온수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배상 확보를 통해 도시가스 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스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설 개선이나 추가 설비 의무 부과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비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향후 정책 환경변화 등과 관계없이
규제 존속 필요(재검토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 변경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개별 기술 조치가 아닌 행정적 절차로서 이행 난이도가 낮고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보험 가입 여부는 기존 검사·점검 시 확인 가능하여 추가적인 행정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부 공고('25.3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5.6 ~ 12월)
- 입법예고('26.2월 ~ 3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수단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임시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및 안전기준 등											
	2.규제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나목4)·다목4) 및 별표5 제2호가목6)											
	3.위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2.11~2026.03.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정압(밸브) 기지 내 배관 등의 이설 및 교체공사를 할 경우 임시로 가스를 공급하는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작업장 위험 증가 발생 ○ (정부개입 필요성)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도입으로 배관 이설·교체 공사 시 안전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 공사계획 승인 대상에 임시공급시설 추가 및 임시공급시설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한국가스안전공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td><td>가스공사 (1개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개사)</td></tr><tr><td>이해관계자</td><td>한국가스안전공사</td><td>1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사 (1개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개사)	이해관계자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사 (1개사)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개사)											
이해관계자	한국가스안전공사	1개사											
9.규제목표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에 배관 등의 이설·교체 공사 시 임시공급시설 설치를 통한 현장 작업의 안전성 확보 및 가스사고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으로 화재·폭발 사고 발생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공사계획의 승인대상</p> <p>1. ~ 2. <생략></p> <p>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p> <p>가. <생략></p> <p>나. 정압기지(정압기)</p> <p>1) ~ 3) <생략></p> <p><u><신설></u></p> <p>다. 밸브기지</p> <p>1) ~ 3) <생략></p> <p><u><신설></u></p> <p>[별표 5]</p> <p>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p> <p>가. 시설기준</p> <p>1) <생략></p> <p>2) 배관설비기준</p> <p>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배관설비기준은 제3호를 따를 것</p>	<p>[별표 2]</p> <p>공사계획의 승인대상</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정압기지 내 임시공급시설</u>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를 사용하여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p> <p>다.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임시공급시설의 설치공사</u></p> <p>[별표 5]</p> <p>2. -----</p> <p>가.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제3호[가목1]사)⑥ 및 ⑦은 제외한다]를 -----</p>

현 행	개 정 안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부대설비기준	6) -----
<u>정압기지</u> 및 <u>밸브기지</u> 에는 비상 전력·조명설비·전기설비·통신 설비 또는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 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가) <u>정압기지</u> ----- ----- ----- ----- -----
<신설>	나) <u>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u> <u>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u> ① <u>임시공급시설의 주위는 인화성</u> <u>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저장·</u> <u>취급하는 장소가 아닐 것</u> ② <u>임시공급시설에는 접근을 금지</u> <u>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u> ③ <u>임시공급시설 중 중압 이상의</u> <u>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내</u> <u>압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u> ④ <u>임시공급시설 중 가스가 통하는</u> <u>부분은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u> ⑤ <u>임시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u> <u>보호시설까지 별표 6의2</u> <u>제1호가목1)나)의 표에 따른</u> <u>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u> ⑥ <u>임시공급시설의 원동기에는 불씨가</u> <u>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u> <u>할 것</u> ⑦ <u>임시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u> <u>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u>

현 행	개 정 안
	<p><u>치를 할 것</u></p> <p>⑧ <u>임시공급시설에는 소화설비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용구 등을 비치할 것</u></p> <p>⑨ <u>임시공급시설이 가동 중일 때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자동차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고정시킬 것</u></p> <p>⑩ <u>임시공급시설은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가스공급시설의 운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작동될 것</u></p> <p>⑪ <u>임시공급시설이 가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가동상태를 감시할 것</u></p> <p>⑫ <u>임시공급시설은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될 것</u></p> <p>⑬ <u>임시공급시설의 가동기간은 시공 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일 것</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배관 등의 이설 및 교체공사를 할 경우 임시로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의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현재는 핫태핑 공법으로만 운영
 - 핫태핑 공법은 배관 이설·교체 공사 시 우회배관 등을 설치하여 가스공급 중단 없이 배관을 이설하는 공법이며, 이는 용접·천공·중량물 등의 위험작업을 수반함
 - 배관 교체·이설공사에 적용되는 핫태핑* 공법과 비교하여 안전성·경제성이 뛰어난 임시공급시설 활용을 위해 법제화 추진 필요

* 핫태핑 공정 개요

- 가스공급 : 우회배관을 설치하여 중단 없는 가스공급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존 배관은 차단, 철거 후 신규배관을 설치하는 공법
- 위험공정 : 핫태핑 공법 적용 시 용접, 천공, 중량물 등 위험작업을 수반

< 임시공급시설과 핫태핑 공법 비교 >



■ 임시공급시설 국내외 운영 사례

구 분	핫태핑	임시공급설비
설치방식	○ 현행 방식 (기존 배관을 철거하면서 신규 배관을 설치하는 공법)	○ 탱크로리 방식 ○ 튜브 트레일러 방식
운영기간	○ 10일 이상 소요	○ 3일 내 설치 가능

활용성	○ 모든 배관망에 적용 가능	○ 저비용·단기간 운영 가능
위험성	○ 천공·도로굴착·용접 등 작업 위험성↑	○ 시공용이 및 시설 운영 안전성↑
민원발생	○ 통행 방해 유발 및 소음 발생	○ 소음 등 민원 발생 감소

- (정부개입 필요성) 정압(밸브)기지 내에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 승인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시설 기준 마련 등 안전성 확보 필요

<임시공급시설 개요>

- (대상설비) 탱크로리 공급설비 및 튜브 트레일러 공급설비

구 분	탱크로리 공급설비(14톤/대)	튜브 트레일러 공급설비(2.18톤/대)
설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설비 : LNG펌프, 기화설비, 부취설비, 정압설비, 계량설비, 기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설비 : 정압라인 2열 + 바이패스 1열, Heater(온도보정)
공급량	○ 20톤 ~ 50톤/일(약 2톤/Hr)	○ 24톤/일 미만(약 0.8톤/Hr)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내용) 사업자가 현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임시공급 방안 선택 가능(핫태핑 또는 임시공급시설)
- (선택 근거)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은 가스공급 연속성 확보와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간담회 실시('25.05.15)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	상기 개정안에 동의하나, 제도 도입에 앞서 준비기간이 필 요함을 건의	부칙반영

3. 규제목표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마련으로 필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가스 공급 연속성 확보 및 안전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사업자가 현장 여건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공사계획 승인과 시설·기술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가스도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향후 정책 환경변화 등과 관계없이
규제 존속 필요(재검토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가스도매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기준 마련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마련하는 규정으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캐나다) CSA Z276(Liquefied natural gas(LNG)-Production, storage, and handling) Annex B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LNG 시설 중 이동식(Portable 또는 Mobile) 기기(Equipment)시설에 대해 활용 중
- (미국) 연방 규정(CFR)에 따라 가스 배관의 수리, 교체 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공급시설(Mobile and temporary LNG facilities)에 대하여 NFPA 59A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하여 운영 가능
- (영국) BS EN 1473(Installation and equipment for liquefied natural gas - Design of onshore installations)에 LNG 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 및 이동용 LNG 설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호주) LNG 설비에 대해서는 AS 3961(The storage and handling of liquefied natural gas), 배관설비는 AS 2881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 및 이동 공급설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일본) 가스사업법에 도시가스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공급시설(일본은 임시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2011년 동일본지진 당시 임시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고 소규모 LNG 시설에 대한 지침 운영 중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 관련 임시공급시설에 대한 기술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한 사례가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구축된 한정된 시설에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행정체계 신설이나 행정적 집행에 문제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부 공고('25.3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5.6 ~ 12월)
- 입법예고('26.2월 ~ 3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정압기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한 합리적인 규제 수단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2.규제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나), 별표7 제1호가목3) 및 4)다)											
	3.위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2.11~2026.03.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div>○ (추진배경)</div> <div>－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제한 목적은 검침 및 점검 용이성에 있으나, 격납상자 등에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가 2m를 초과 시 점검 및 검침이 어려움</div> <div>－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사용시설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등 안전기준 부재</div> <div>○ (정부개입 필요성)</div> <div>－ 가스계량기를 격납상자 등에 설치하더라도 검침 및 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높이를 2m 이내로 제한하여 안전성 확보</div> <div>－ 가스사용시설의 대규모화 추세에 대응해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강화 필요</div>											
	7.규제내용	<div>○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div> <div>○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신축흡수조치 · 보호판 · 라인마크)</div>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일반도시가스사업자</td><td>34개사</td></tr><tr><td>피규제자</td><td>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td><td>1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4개사	피규제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4개사											
피규제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개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div>○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로 검침 및 점검의 작업 편의성 확보</div> <div>○ 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대형 건축물 등 사용시설 안전성 확보</div>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으로 화재·폭발 사고 발생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1. -----
가. 시설기준	가. ----
1) 배치기준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스계량기(30 m ³ /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u>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u>	나) ----- ----- ----- ----- ----- ----- ----- ----- <u>바닥 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u>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가스설비기준	2)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3) 배관설비기준	3)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예	다) -----

현행	개정안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 ----- ----- ----- -----
<u><신설></u>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 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를 준용할 것
	②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 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를 준용할 것	<u><삭제></u>
마) ~ 아) <생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아) ----- ----- -----

현 행	개 정 안
<p>표시를 할 것</p> <p>①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u></p>
<p><u>차) ~ 타)</u> <생략></p> <p>4) 사고예방설비기준</p> <p>가) <생략></p> <p>① ~ ③ <생략></p> <p>나) <생략></p> <p><u><신 설></u></p>	<p><u>자) ~ 카)</u> <현행과 같음></p> <p>4) -----</p> <p>가) <현행과 같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u>다) 중압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u></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가스계량기 설치높이는 1.6 ~ 2.0m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격납상자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높이에 대한 제한 부재
 -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제한 목적은 검침 및 점검 용이성에 있으나, 설치높이가 2.0m를 초과 시 검침 및 점검이 어려움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사용시설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등 안전기준이 부재

<신축흡수조치 및 보호판·라인마크 설치 시 기대효과>



- 가스사용시설의 배관 길이 증가 등 시설의 대규모화 추세에 대응해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대국민 안전확보 필요
 - 가스계량기를 격납상자 등에 설치하더라도 검침 및 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2m 이내 설치하도록 높이를 제한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 가스사용시설도 가스공급시설의 노출배관에 대한 신축흡수조치, 매설배관의 보호판 및 라인마크 설치기준 준용하여 사용시설 배관의 안전성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 기존 규제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가스사용시설 안전기준 마련
	내용	○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 ○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 가스계량기 설치높이에 대한 제한 부재로 점검원의 점검 및 검침 어려움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신축흡수 조치, 보호판 및 라인마크등 설치기준 부재
규제대안1	○ 가스계량기 점검 및 검침 시 안전성 제고 ○ 가스공급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가스사용시설의 배관 안전성 확보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 등	○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 가스사용시설 배관의 안전 기준 개정 등 관련 업계 간담회('25.06.30)	가 스 공 급 시 설 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닌 가스사용시설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준 마련 건의의	상 세 기 준 인 KGS Code 반영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가스계량기의 높이를 설정하여 작업자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장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므로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도시가스 사고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구분 없이 발생하므로 가스사용시설 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고 예방 측면에서 합리적임

3. 규제목표

- 가스계량기 점검·검침의 점검원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 가스공급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스계량기 높이를 합리화하는 것은 안전 목적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구조 변경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목적 대비 과도하지 않은 비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신축흡수조치, 보호판 및 라인마크 설치 등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사고예방 효과가 크며, 전면적인 설비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비용 부담도 제한적이므로 규제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하지 않은 비례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향후 정책 환경변화 등과 관계없이
규제 존속 필요(재검토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제한은 점검 및 검침의 안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 제시로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은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닌 기존 가스공급시설의 준용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제한은 기존 점검 체계 내에서 집행가능하므로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은 기존 가스공급시설 검사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부 공고('25.3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5.6 ~ 12월)
- 입법예고('26.2월 ~ 3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수단으로 판단됨